

2024년 장애인 생활체육 국비 지원 사업 제공모 안내

도내 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도내 장애인 체육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4. 06.

경기도장애인체육회장

2024년 장애인 생활체육 국비 지원 사업 제공모 안내

2024. 6.

체육지원팀

I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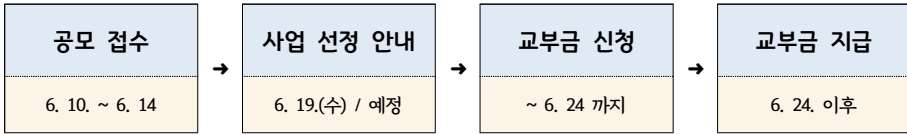
- 사업기간 : 2024. 6. ~ 12
- 사업장소 : 경기도 일원
- 지원대상 : 동호인 클럽 사업을 희망하는 도내 소재 기관 및 단체 등
- 사업비 : 6,000천원(잔여 사업비)
- 주요내용

(단위 : 천원)

사업내용	공모개소	사업비	개소별 지원액
합 계	2	6,000	-
동호인클럽 지원	2	6,000	3,000

II 공모개요

○ 진행흐름



○ 접수기간 : 2024. 6. 10.(월) ~ 6. 14.(금) 17:00까지 ※ 제출 기한 엄수

○ 접수방법 : 전자문서(그룹웨어) 접수

※ 전자결재 미등록 단체 e-mail 제출(0428@psg.or.kr)

○ 제출서류 : ①공문, ②사업별 사업계획서 ※ 첨부파일 참고

○ 접수처 :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체육지원팀

○ 접수절차 : 참여 희망기관 →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체육지원팀으로 공문 제출
- 클럽 개별 제출 불가, 도내 기관(복지관) 및 운영단체(시군장애인체육회, 기맹단체) 제출

○ 주의사항

-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필수 (전문체육선수 지원 불가,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불가 인원 발생 시 사업선정 취소 및 교부금 지급불가)
- 재공모 건으로 6월부터 주2회, 최소 24회기 이상 운영가능 하여야함.
- 국비지원 사업으로 E나라시스템을 통한 사업운영이 가능한 기관 이어야함.

1 동호인클럽 지원

가. 사업형태 : 공모

나. 지원대상 : 도내 소재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승인 클럽
다. 지원개소 : 2개소 이상

라. 사업금액 : 6,000천원

마. 지원기준

- 1) 클럽 당 주2회 24회 이상 운영
- 2) 클럽명으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제출 필수
- 3) 순수 생활체육동호인으로 구성된 클럽 ※ 전문선수 포함된 클럽 지원 불가
- 4) 클럽 구성 15명 이상 ※ 매니저, 운영요원 등 포함 / 중증장애인 2배수 적용
- 5) 통합정보시스템 내 참여자 등록 필수

바. 예산지원 항목

목	세목	항목	금액	지원내용	
운영비	일반수용비	매니저 수당	월150,000원	지원기간 월별 정액지원	
		운영요원 수당	일 50,000원 이내	1월 기준 * 예산교부단체 및 유관기관 임직원 지급 불가	
		운동용품	실비	공동용품 지원 * 개인용품 지원 불가	
		홍보물	실비	현수막, 팸플렛, 포스터 등	
	공공요금 및 제세	보험가입	실비	상해보험 가입 (기금 또는 자부담 의무편성)	
		임차료	시설임차료	실비	장소 임차비 및 입장료, 사용료 등
			운동용품	실비	용기구·장비 임차비
	차량임차		실비	특장버스 및 응급차량 임차 등	
	기타 운영비	의료약품	실비	소모성 의료약품 구입	
	업무추진비	사업추진비	간식, 음료 등	20만원 이하	간식(음료 등) *식사금지

사. 선정기준

- 1) 지체장애 유형 클럽 우선 지원(장애 목표 비율)
- 2)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

동호인클럽 평가기준															
평가항목(100점)	세부내용														
참여인원 (30점)	○ 참여인원(30점) ※ 통합정보시스템 의무 등록 必														
	30점 30명 이상	24점 19명 ~ 24명	18점 13명 ~ 18명	12점 7명 ~ 12명	6점 6명 이하										
※ 중증장애인 1명 당 2명 인정															
사업운영 적합성 (30점)	○ 운영횟수(20점)														
	20점 30회 이상	16점 28회 ~ 39회	12점 26회 ~ 27회	8점 24회 ~ 25회	4점 24회 미만										
	○ 장애인편의시설(10점) ① 장애인전용 화장실 또는 샤워실 ② 경사로 ③ 유도블럭 ④ 점자표시판 ⑤ 기타(명시)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d>10점</td> <td>8점</td> <td>6점</td> <td>4점</td> <td>2점</td> </tr> <tr> <td>4개 이상</td> <td>3개</td> <td>2개</td> <td>1개</td> <td>0개</td> </tr> </table>						10점	8점	6점	4점	2점	4개 이상	3개	2개	1개	0개
10점	8점	6점	4점	2점											
4개 이상	3개	2개	1개	0개											
홍보방안 (15점)	○ 사업홍보 계획(15점)														
	- 현수막 또는 배너(필수) - 홍보 1개당 3점씩 부여 ※ 신문기사, 인터넷기사, 홈페이지홍보, SNS홍보, 블로그홍보, 카페홍보, 기타(명시) 등 ※ 최소 1회 이상 게재 권고														
안전 및 방역대책 (20점)	○ 안전 및 방역 대책(20점)														
	① 상해보험가입 ② 비상연락망 구축(내외부) ③ 의료기관 연계														
	④ 안전 및 방역 메뉴얼 ⑤ 안전 및 방역장비 배치 ⑥ 기타 ※ 사업계획서 제출 시 매뉴얼 별도 첨부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d>20점</td> <td>16점</td> <td>12점</td> <td>8점</td> <td>4점</td> </tr> <tr> <td>5개 이상</td> <td>4개</td> <td>3개</td> <td>2개</td> <td>1개 이하</td> </tr> </table>						20점	16점	12점	8점	4점	5개 이상	4개	3개	2개	1개 이하
20점	16점	12점	8점	4점											
5개 이상	4개	3개	2개	1개 이하											
전년도 선정 사업 (5점)	○ 전년도 선정 사업 (5점)														
	5점 전년도 선정		0점 전년도 미선정												